

# 「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8. 26 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9.22 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9.22 (월)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이경식)

가. 대통령령 제20464호(2007.12.28)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 및 예산 지원액의 조정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(안 제1조)

-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 
⇒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변경

2) 예산지원 범위 문안의 현실적 수정(안 제4조제1항)

- “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%”  
⇒ “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의 10%”  
변경

3) 보조기준액 단서 신설(안 제4조제1항)

- 다만, 군수가 국비·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예산지원의 절차적 합리성과 부동산 교부세 재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예산지원 범위를 "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%"에서 "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의 10%"로 조정하므로서,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결산검사가 완료된 이후 지원에 따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사항이고,
- "군수가 국·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" 단서조항을 신설하므로서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부문과 관련된 추가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
- 상위법령의 법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,
- 2006, 2007년도 연도별 지원한도를 검토한 결과, 2006년도는 당초예산 12,064백만원 / 결산액 15,983백만원이고,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 13,871백만원 / 결산액 18,800백만원으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의 한도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단서조항의 신설로 지원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다. 결과적으로,

-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【붙임】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    끝